

## 재해사례

(벽돌)

## 창문 해체작업 중 떨어진 벽돌에 맞음



빌라 3층 창문 해체작업 중 그 밑에서 낙하물에 의한 지하 1층 유리 창문 파손 방지를 위해 합판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약 10m 높이에서 떨어진 창문 치장벽돌에 머리를 맞음

※ 치장벽돌 : 보통벽돌을 약간 곱게 구운 것으로 콘크리트 벽면 등에 치장용으로 붙인다.



## ! 재해발생 원인

-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체(낙하물)에 대한 사전 위험방지조치 미실시
  - 위험장소 내 근로자 출입제한 조치 미실시
  - 안전모 미착용
- 해체 작업계획서 미작성

## + 안전작업 방법

TIP

- 1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실시
  -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
  - 출입금지구역의 설정
- 안전모 착용 철저
- 2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안전작업 실시





## 창문 해체작업 중 떨어진 벽돌에 맞음

# 해체작업시, 출입 제한 조치와 안전모 착용하세요!

창문해체 작업 중  
벽돌이 떨어져 지상에서  
작업 중인 작업자가 맞아  
1명이 사망한 재해입니다.

작업반장이 작업내용에  
대하여 작업지시를  
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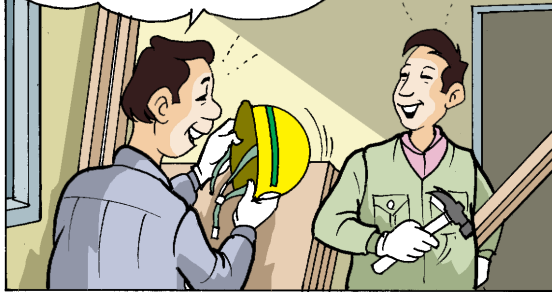
안방부터 철거하고, 아래층에  
벽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 
합판으로 막아주세요.



꼭 안전모, 안전화 착용 하시고요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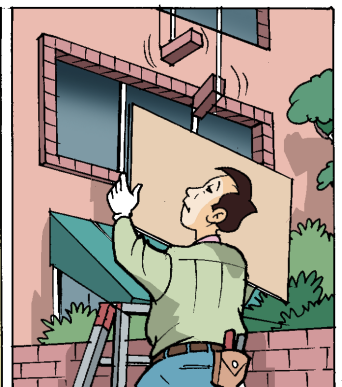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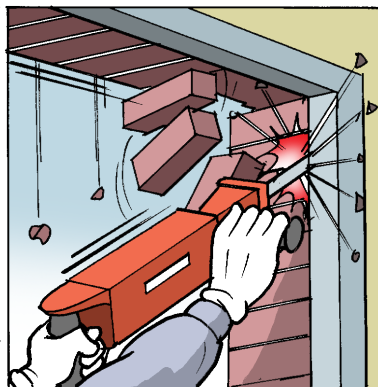
철거는 내가 할테니, 자네는  
내려가서 합판을 씌우게...



아차! 안전모를  
안 가져왔네!



여긴 잘  
떨어지지 않네?



해체 작업시 떨어지거나  
날아온 물체에 맞을 위험이  
있는 장소에서는 타 작업자의  
출입을 제한하고  
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 
착용해야 합니다. 안전  
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 
합니다.



### 참고법령 및 기준

####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0조(출입의 금지), 제32조(보호구의 지급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)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